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 기준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종전의 장애 등급이 제1급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종전의 장애 등급이 제4급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6. 10.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p> <p>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p> <p>1)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p> <p>2)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p> <p>3)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p> <p>4)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p> <p>5)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p>	<p>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p>

6)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

보상금의 100분의 25

나. (생략)

4.·5.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06